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제주)2016누1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redacted]

제 1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구합5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8,175,000원, 농어촌특별세 6,768,75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8

지방교육세 13,537,500원의 부과처분과 취득세 2,591,620원, 농어촌특별세 108,680원, 지방교육세 217,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이장욱

판사 송재윤